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(안)

의안번호	
------	--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개정(법률 제4464호 91. 12. 31)됨에 따라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2. 주요골자

- 상임위원회를 들에 따라
 - 청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협의해야 함을 삽입.
 - 청원서 회부와 심사가 접수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의함을 삽입.
 - 소개위원의 취지설명시 본회의 요구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 취지를 설명함.
 - 청원인등의 진술요구시 본회의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요구로 개정함.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(안)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5 조(이의신청) 제2항중 “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”를 “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 6 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,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, 회부한다.

제 7 조(소개위원의 취지설명) 중 “본회의 또는 위원회의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하며, “본회의 또는 위원회에”를 “위원회에”로 한다.

제 8 조(청원인등 진술) 제1항중 “본회의 또는 위원회는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이의신청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,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, 배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③ ④ (생략)</p> <p>제7조(소개의원의 취지설명).....</p> <p>.....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</p> <p>제8조(청원인등 진술) ① <u>본회의 또는 위원회는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이의신청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의원에게 인쇄,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거나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, 회부한다.</p> <p>② ③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소개의원의 취지설명).....</p> <p>..... 위원회의</p> <p>..... 위원회에</p> <p>제8조(청원인등 진술) ① <u>위원회는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